

#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사례

# 60

選





#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사례 60選

 해당 책자는 세관에서 수행한 원산지결정기준 검증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일부 사례의 구체적 검증결과는 실제 검증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세관 자체 검증결과로서 관세청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발간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전 세계 55개국과 총 16개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해 총 교역량의 70%가 FTA를 활용할 정도로 FTA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FTA 확대는 우리기업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FTA 적용받은 물품이 해당국의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상기 확인절차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세관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사례 60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지난 3년간 우리세관이 실시한 원산지조사 위반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엄선하였고, 잘못된 세번분류나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내용 뿐만 아니라, ‘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협정’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동종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이 실무상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원산지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세관장 이명구 0/267

# Contents

## I . 농림수산물

01. 브라질너트 (제0801.22호, 한-페루 FTA)	08
02. 커피원두 (제0901.21호, 한-아세안 FTA)	09
03. 홍차 (제0902.30호, 한-미 FTA)	10
04. 바오밥열매가루 (제1106.30호, 한-EU FTA)	11
05. 히비스커스 (제1211.90호, 한-EU FTA)	12
06. 링콘베리 추출물 (제1302.19호, 한-중 FTA)	13
07. 구아검 (제1302.32호, 한-미 FTA)	14
08. 올리브유 (제1509.90호, 한-EU FTA)	15
09. 해바라기씨유 (제1512.19호, 한-아세안 FTA)	16
10. 아르간오일 (제1515.90호, 한-EU FTA)	17
11. 캔디류 (제1704.90호, 한-중 FTA)	18
12. 복은 코코아두 (제1801.00호, 한-EU FTA)	19
13. 초콜릿과자 (제1806.31호, 한-중 FTA)	20
14. 유아용식품 (제1904.10호, 한-EU FTA)	21
15. 케이퍼 피클 (제2001.90호, 한-EU FTA)	22
16. 콩 통조림 (제2005.51호, 한-EU FTA)	23
17. 이유식 (제2007.10호, 한-미 FTA)	24
18. 캐슈넛 (제2008.19호, 한-미 FTA)	25
19. 믹싱너트 (제2008.19호, 한-아세안 FTA)	26
20. 복숭아 통조림 (제2008.70호, 한-아세안 FTA)	28
21. 스무디 (제2008.97호, 한-미 FTA)	29
22. 라임주스 (제2009.31호, 한-미 FTA)	30
23. 노니주스 (제2009.90호, 한-미 FTA)	31



24. 마테차 (제2101.20호, 한-EFTA FTA)	32
25. 차 조제품 (제2102.20호, 한-미 FTA)	33
26. 스피루리나 (제2102.20호, 한-뉴질랜드 FTA)	34
27. 과실주스 음료 (제2202.99호, 한-EU FTA)	35
28. 어류가루 (제2301.20호, 한-EU FTA)	36
29. 개·고양이 사료 (제2309.10호, 한-EU FTA)	37
30. 사료첨가제 (제2309.90호, 한-싱가포르 FTA)	38
31. 잎담배 (제2401.20호, 한-아세안 FTA)	39

## II. 섬유류

32. 니들룸펠트 (제5602.10호, 한-미 FTA)	42
33. 풀오버 (제6110.11호, 한-EFTA FTA)	43
34. 캐시미어의류 (제6110.12호, 한-아세안 FTA)	44

## III. 화학공업제품

35. 전기절연유 (제2710.19호, 한-인도 FTA)	46
36. 윤활유 (제2710.19호, 한-호주 FTA)	47
37. 살충제 (제3808.91호, 한-아세안 FTA)	48
38. 윤활유첨가제 (제3811.21호, 한-싱가포르 FTA)	49
39. 유리 괴, 웨이스트 (제7001.00호, 한-중 FTA)	50
40. 철도차량용 접합유리 (제7007.21호, 한-EFTA FTA)	51
41. 유리섬유제품 (제7019.52호, 한-아세안 FTA)	52

## IV. 철강금속제품

42. 납의 괴 (제7801.91호, 한-인도 FTA)	54
43. 주석 괴 (제8001.10호, 한-아세안 FTA)	55

# Contents

## V. 기계류

44. 공작기계 (제8457.10호, 한–중 FTA)	58
45. 레이저기계부분품 (제8466.93호, 한–아세안 FTA)	59
46. 밸브부분품 (제8481.90호, 한–인도 FTA)	60
47. 볼베어링 (제8482.10호, 한–EU FTA)	61
48. 치과용 부분품 및 기자재 (제9018.49호, 한–EU FTA)	62
49. 의료기기 (제9018.50호, 한–미 FTA)	63
50. 수술용 현미경 (제9018.90호, 한–아세안 FTA)	64
51. ECU (제9032.89호, 한–인도 FTA)	65
52. ECU (제9032.89호, 한–중 FTA)	66
53. 손목시계 (제9101.11호, 한–EFTA FTA)	67

## VI. 전자전기제품

54. 손전등 세트 (제8513.10호, 한–중 FTA)	70
55. 흑연전극봉 (제8545.11호, 한–아세안 FTA)	71

## VII. 생활용품

56. 명품가방 (제4202.21호, 한–EU FTA)	74
57. 신발 (제6403.99호, 한–인도 FTA)	75
58. 운동기구 (제9506.99호, 한–EU FTA)	76

## VIII. 잡제품

59. 다이아몬드 (제7102.39호, 한–인도 FTA)	78
60. 큐빅지르코니아 (제7104.90호, 한–EU FTA)	79

## IX. 부록

1.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82
2. FTA 원산지검증 절차	83

I

# 농림수산물



## 01. 브라질너트

농림수산물

### 품 명

▶ 브라질너트 (MTI 분류 : 농산물 > 곡실류)

### HS코드

▶ 0801.22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적용협정

▶ 한-페루 FTA

### 원산지결정기준

▶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0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위반사항

▶ 역외(브라질,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브라질너트를 페루에서 탈각 공정을 거쳐 수출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페루에서 재배되지 않은 브라질너트를 사용할 경우 탈각, 가공공정 등을 거쳐도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함. 해당 원재료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중미, 한-아세안, 한-EFTA, 한-호주, 한-중국, 한-인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 02. 커피원두

농림수산물

품 명

▶ 커피원두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0901.21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껌데기와 껌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 포함 비율은 상관없다)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위반사항

▶ 역내부가가치 산출 시 가격 산정 과정에서 다음의 오류가 발생, 실제 발생한 역내부가가치는 45%를 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산정 시, 회계상 반영되지 않은 수익을 포함 시킴으로써 과다하게 계산
- 비원산지재료가격(VNM) 산정 시, 수출국의 원재료 수입신고서상의 가격 (CIF) 및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항목을 적용하여 과소하게 계산

유의사항

▶ 역내부가가치 산출 시 자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협정에서 규정한 필요 항목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03. 홍차

농림수산물

### 품 명

▶ 홍차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 HS코드

▶ 0902.30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적용협정

▶ 한-미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 위반사항

▶ 제9류에 해당되는 주 원재료인 찻잎이 역외(인도,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해당물품의 일반적인 제조과정에 따르면 주 원재료인 찻잎이 완제품과 동일한 류(09류)에 해당되므로 가공공정을 거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위험성이 있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에 사용되는 찻잎은 체약당사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뉴질랜드

## 04. 바오밥열매가루

농림수산물

**품 명**

▶ 바오밥열매가루 (MTI 분류 : 농산물 > 곡실류)

**HS코드**

▶ 1106.30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  
(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07류 :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0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상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위반사항**

▶ 역외(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제11류 원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생산에 사용되는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 원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 05. 히비스커스

농림수산물

### 품 명

- ▶ 히비스커스 분말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 HS코드

- ▶ 1211.90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적용협정

-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2류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위반사항

- ▶ 역외(이집트,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 생산에 사용되는 제12류 원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한-EFTA, 한-터키, 한-인도, 한-콜롬비아

## 06. 링곤베리 추출물

농림수산물

**품 명**

▶ 링곤베리 추출물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1302.19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적용협정**

▶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위반사항**

▶ 역외(북유럽, 미국북부의 혹한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식물성 추출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 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아세안

## 07. 구아검

농림수산물

품 명

▶ 구아검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물질)

HS코드

▶ 1302.32

1302.32 로커스트콩(locust bean), 로커스트콩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  
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  
없다)

적용협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위반사항

▶ 역외산 원재료(제13류)로 구아검을 제조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구아검과 원재료인 구아추출분말이 동일 류(제13류)이므로 역외산 구아  
추출분말로 추가가공을 한다 해도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수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캐나다, 한-칠레

## 08. 올리브유

농림수산물

**품 명**

- ▶ 올리브유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물질)

**HS코드**

- ▶ 1509.90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적용협정**

-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위반사항**

- ▶ 역외(NON-EU)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를 우회 수출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식물성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므로 올리브의 재배, 착유 등의 가공공정이 모두 EU역내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한-터키

## 09. 해바라기씨유

농림수산물

품명

▶ 해바라기씨유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물질)

HS코드

▶ 1512.19

1512.19 해바라기씨유(정제했는지에 상관없이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위반사항

▶ 정제 전 조유상태의 역외산 해바라기씨유를 역내에서 정제 후 수출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해바라기씨유는 정제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역외산 해바라기씨유를 정제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또한, 해바라기 씨유의 경우 FOB금액 대비 원재료의 비중이 높아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10. 아르간오일

농림수산물

품 명

▶ 아르간오일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물질)

HS코드

▶ 1515.90

1515.90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위반사항

▶ 역외산 아르간오일을 우회 수입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아르간열매 자체는 모로코에서 수출금지 품목이므로, 아르간오일을 수입하여 세번변경없이 우회 수출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우려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 11. 캔디류

농림수산물

품 명

▶ 캔디류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HS코드

▶ 1704.9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적용협정

▶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위반사항

▶ 캔디 제조 시 역외산 원재료(팜유, 코코넛유 등)가 사용되어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캔디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함. 캔디류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재료 중 야자 경황유, 코코넛유 등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역외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 없음

동일 협정

## 12. 볶은 코코아두

농림수산물

**품 명**

▶ 볶은 코코아두 (MTI 분류 : 농산물 > 산식물)

**HS코드**

▶ 1801.00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 한다)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CTH + MC 30%)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위반사항**

▶ 역외산 코코아빈을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코코아빈은 생 것(Raw)과 볶은 것(Roasted)이 동일 세번(HS 1801호)에 분류되어, 비록 로스팅 등의 작업이 역내에서 이루어져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역외산 코코아빈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FTA

## 13. 초콜릿과자

농림수산물

품 명

▶ 초콜릿과자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1806.31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적용협정

▶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2.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50%)

위반사항

▶ 완제품과 동일 류(제18류)에 속하는 역외산 원재료(코코아 매스, 코코아 버터 등)로 초콜릿과자를 생산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코코아두부터 초콜릿 제품,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모두 동일 류에 해당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려면 코코아두부터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함. 또는, 제품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30~55%) 되는 설탕이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등이 역외산일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50%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14. 유아용식품

농림수산물

품 명

▶ 유아용식품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HS코드

▶ 1904.10

1904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CTH)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그들의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MC 30%)

위반사항

▶ 생산물품에 역외산 원재료가 혼입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생산에 사용되는 제1806호, 제10류, 제11류 원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며, 제17류인 당류(糖類)에 해당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15. 케이퍼 피클

농림수산물

품 명

▶ 케이퍼 피클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HS코드

▶ 2001.90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외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MC 30%)  
제07류 :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0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12류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집과 사료용 식품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위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생산에 사용되는 제7류, 제8류 및 제12류 원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하며, 제17류인 당류(糖類)에 해당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 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 16. 콩 통조림

농림수산물

**품 명**

- ▶ 콩 통조림 (MTI 분류 : 농산물 > 곡실류)

**HS코드**

- ▶ 2005.51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적용협정**

-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MC 30%)  
 제07류 :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0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12류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위반사항**

- ▶ 사용된 주 원재료 중 제7류에 해당되는 콩이 역외(중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 생산에 사용되는 제7류, 제8류 및 제12류 원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며, 제17류인 당류(糖類)에 해당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한-터키

## 17. 이유식

농림수산물

품 명

▶ 이유식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HS코드

▶ 2007.10

2007 잼·과일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적용협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류의 주석〉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 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또한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위반사항

▶ 원재료가 되는 과일퓨레 중 일부품목에 대해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조제이유식(HS 2007.10)의 원재료인 과일퓨레도 동일한 제20류에 해당 하므로, 역외산 퓨레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또한 제0701호의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는 역내산을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18. 캐슈넛

농림수산물

**품 명**

- ▶ 캐슈넛 (MTI 분류 : 농산물 > 산식물)

**HS코드**

- ▶ 2008.19

2008 그 밖의 방법(2001호~2007호 제외)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류의 주석〉**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 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체액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또한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체액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위반사항**

- ▶ 역외산(베트남) 캐슈넛(제0801호)을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제20류 주석에 따른 요건 불충족)

**유의사항**

- ▶ 한-미 FTA규정상 제20류 물품의 경우 원재료와 완제품이 서로 다른 류에 분류되더라도 제20류의 주석에 언급된 공정(볶음)을 수행할 경우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없음

## 19. 믹싱너트

농림수산물

품 명

▶ 믹싱너트 (MTI 분류 : 농산물 > 산식물)

HS코드

▶ 2008.19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0802호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제0802.31호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호두
- 제0802.32호 : 껍데기를 벗긴 호두
- 제0802.40호 : 밤
- 제0802.90호 : 기타

**위반사항**

- ▶ 역외산(미국) 피칸(제0802.90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 완제품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 생산에 사용되는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 원재료의 경우에는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없음

## 20. 복숭아 통조림

농림수산물

### 품 명

▶ 복숭아 통조림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 HS코드

▶ 2008.70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 위반사항

▶ 역외산 복숭아 통조림(HS 2008.70)을 역내에서 단순 포장 후 재수출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제08류인 냉동 복숭아를 사용하여 제20류의 복숭아 통조림을 생산하게 되면, 원산지결정기준(CTH)을 충족하나, 역외산 복숭아 통조림(HS 2008.70)을 역내에서 단순 포장 후 재수출하게 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베트남

# 21. 스무디

농림수산물

**품 명**

- ▶ 스무디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HS코드**

- ▶ 2008.97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류의 주석〉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 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또한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위반사항**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는 복숭아, 배, 살구 농축물에 대해 일부 역외산 원재료가 혼입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 과실 스무디의 생산에 사용된 복숭아, 배, 살구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며,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 재료가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서는 안 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없음

## 22. 라임주스

농림수산물

품 명

▶ 라임주스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2009.31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C)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위반사항

▶ 해당주스의 주원료인 라임이 제0805호에 분류되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20류 및 제0805호의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함. 또한, 한-미 FTA 협정의 경우 미소 기준 적용 예외 규정(부속서 6-나 바항)에 따라 제0805호 또는 제20류 원재료는 소량이라도 사용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최소허용수준 : 부속서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부속서 6-나 바항>  
바. 품목번호 0805 또는 2009.11부터 2009.39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2009.11부터 2009.3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2106.90 및 2202.900에 해당하는 과일 또는 야채 주스(농축 또는 비농축 처리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처리한 단일한 종류의 과실 또는 야채로 가공한 주스를 말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캐나다

## 23. 노니주스

농림수산물

**품 명**

▶ 노니주스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2009.89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위반사항**

▶ 동일 류(제20류)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 사용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노니 과실류(제08류)로부터 생산된 노니주스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 역외산 노니퓨레 및 주스(제20류)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함. 또한, 한-미 FTA 협정의 경우 미소기준 적용 예외 규정(부속서 6-나 카항)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가 소량이라도 사용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최소허용수준 예외 : 부속서6-나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됨

〈부속서 6-나 카항〉

카.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캐나다, 한-중국

## 24. 마테차

농림수산물

### 품 명

▶ 마테차 (MTI 분류 : 농산물 > 농산가공품)

### HS코드

▶ 2101.20

2101.20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CTH + MC 45%)

### 위반사항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45% 이상이 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마테차(HS2101.2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EU 협정이 'CTH(세번변경 기준)'인데 비해, 한-EFTA 협정은 'CTH + MC45'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한-EU 협정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 동일 협정

▶ 없음

## 25. 차 조제품

농림수산물

품 명

▶ 차 조제품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재료)

HS코드

▶ 2101.20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적용협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위반사항

▶ 역외산(중국산) 녹차 추출물(제2101.20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한-미 FTA 협정의 경우 미소기준 적용 예외 규정(부속서 6-나 카항)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를 소량이라도 사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최소허용수준 예외 : 부속서6-나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됨

〈부속서 6-나 카항〉

카.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26. 스피루리나

농림수산물

### 품 명

▶ 스피루리나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재료)

### HS코드

▶ 2102.20

2102.2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2102.20.40 스피루리나(spirulina)

-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스피루리나(spirulina)

- 2102.20.4090 기타의 스피루리나(spirulina)

### 적용협정

▶ 한-뉴질랜드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위반사항

▶ 역외산(미국 등) 스피루리나 분말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스피루리나는 제2102.20-40호에 특게되어 있어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중미, 한-EFTA,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국

## 27. 과실주스 음료

농림수산물

**품 명**

▶ 과실주스 음료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2202.90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MC 30%)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재료일 것
4. 제1211.20호(인삼류) 및 제1302.19호(인삼·홍삼의 수액, 추출물등)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것

**위반사항**

▶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에 해당하는 과일주스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과일주스는 역외산을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2202호, 제2009호의 과일주스(일부제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는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원재료 중 설탕 등 당류(제17류)가 비원산지재료인 경우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EXW)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 28. 어류가루

농림수산물

품 명

▶ 어류가루 (MTI 분류 : 수산물·수산가공품)

HS코드

▶ 2301.20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적용협정

▶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다만,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위반사항

▶ 역외 국가인 노르웨이(EFTA)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된 후 EU로 반입되어  
단순가공 및 재포장 작업만 수행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식용이 가능한 제2류 및 제3류의 모든 원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다만, 제2류 및 제3류를 제외한 재료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충족하면 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29. 개·고양이 사료

농림수산물

**품 명**

▶ 개·고양이 사료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물질)

**HS코드**

▶ 2309.10

2309.10 사료용 조제품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모든 재료는 원산지 재료인 것

제02류 : 육과 식용 설육

제0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제04류 :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위반사항**

▶ 역외에서 생산된 제3류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생산에 사용되는 제2류~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 원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원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체약당사국이 주 생산지가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 30. 사료첨가제

농림수산물

품 명

▶ 사료첨가제 (MTI 분류 : 농산물 > 식물성 물질)

HS코드

▶ 2309.90

2309.90 사료용 조제품 – 사료첨가제

적용협정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

▶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55%)

위반사항

▶ 역외산 원재료 사용으로 55%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못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해당 세번 물품은 역외산 원재료 과다 사용 시 역내부가가치가 55% 미만으로 측정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이 불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31. 잎담배

농림수산물

**품 명**

▶ 잎담배 (MTI 분류 : 농산물 > 기호식품)

**HS코드**

▶ 2401.20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위반사항**

▶ 생산물품에 역외산 원재료가 혼입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해당 물품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함. 또한,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외산 재료가 소량이라도 사용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중국, 한-베트남



II

# 섬유류



## 32. 니들룸펠트

섬유류

### 품명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 (MTI 분류 : 섬유제품 > 기타섬유제품)

### HS코드

▶ 5602.10

5602 펠트(felt)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적용협정

▶ 한-미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CC)

### 위반사항

▶ 최소허용수준 규정은 섬유원료 또는 원사만의 총 중량 기준으로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나, 이를 잘못하여 모든 구성요소(섬유 및 화학재료, 코팅제)를 합산한 중량으로 최소허용수준을 계산하는 오류

\* 한-미 FTA 제4.2조 제7항 최소허용수준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유의사항

▶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섬유)만이 최소허용수준 고려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33. 풀오버

### 품 명

▶ 풀오버 (MTI 분류 : 섬유제품 > 의류)

### HS코드

▶ 6110.11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한정한다.

### 위반사항

▶ 역외(루마니아)에서 공급된 원단으로 의류를 생산하였으나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않아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했을 경우 그 원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류로 분류되고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가공공정이 수행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의류의 경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생산 공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재단공정이 수반됐는지 확인하는 등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의 수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 동일 협정

▶ 없음

## 34. 캐시미어의류

섬유류

### 품 명

- ▶ 캐시미어 풀오버 (MTI 분류 : 섬유제품 > 의류)

### HS코드

- ▶ 6110.12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적용협정

- ▶ 한-아세안 FTA

### 원산지결정기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 위반사항

- ▶ ① 역외(중국)에서 공급된 캐시미어사(제51류)로 의류(제61류)를 생산하였으나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하였으며,  
② 역내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FOB 및 역외산 원재료의 가격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 확인 불가

### 유의사항

-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했을 경우 그 원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류로 분류되고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었거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원산결정기준 충족함. 의류의 경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생산 공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반됐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FTA특례법상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없음

III

# 화학공업제품



## 35. 전기절연유

화학공업제품

품명

▶ 전기절연유 (MTI 분류 : 석유화학제품 > 기타석유화학제품)

HS코드

▶ 2710.19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

적용협정

▶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위반사항

▶ 냄프텐계오일과 파라핀계오일과 같은 역외산(미국 등)원재료인 윤활기유(제2710.19호)를 사용하여 완제품인 전기절연유(제2710.19호)를 제조, 원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원산지결정기준(CTH)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변압기유를 제조할 경우, 그 원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호로 분류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함. 윤활유의 품목 특성상 주원료인 윤활기유와 완제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주의할 필요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한-터키

## 36. 윤활유

# 화학공업제품

### 품 명

▶ 윤활유 (MTI 분류 : 석유화학제품 > 기타석유화학제품)

### HS코드

▶ 2710.19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

### 적용협정

▶ 한-호주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제27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 위반사항

- ▶ ① 역외(미국산)에서 공급한 원재료인 윤활기유를 혼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했으므로 4단위 세번(제2710호)을 불충족하며
- ② 화학반응, 상압증류, 감압증류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특수공정이 발생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윤활유는 주요 원재료인 윤활유 기유와 HS 4단위가 동일하여 역외산 윤활유 기유를 사용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함. 또한 윤활유는 윤활유 기유와 첨가제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혼합되는 혼합물로 화학반응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특수공정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에 주의할 필요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뉴질랜드

## 37. 살충제

화학공업제품

품명

▶ 살충제 (MTI 분류 : 정밀화학제품 > 농약 및 의약품)

HS코드

▶ 3808.91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조제품  
으로 한 것, 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  
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위반사항

▶ 완제품과 동일 호(HS 3808)로 분류되는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원재료의 가치가 협정상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최소허용수준 :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유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원재료가 다른 호로 분류되거나,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원재료가  
동일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원재료의 세번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일 호로 분류될 경우 최소허용수준 충족여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페루,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 38. 윤활유첨가제

화학공업제품

품 명

▶ 윤활유첨가제 (MTI 분류 : 정밀화학제품 > 기타정밀화학제품)

HS코드

▶ 3811.21

3811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 포함)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위반사항

▶ 완제품과 동일 호(HS 3811)로 분류되는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원재료의 가치가 협정상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최소허용수준 :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유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원재료가 다른 호로 분류되어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혼합물의 경우 원재료가 동일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원재료의 세번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일 호로 분류될 경우 최소 허용수준 충족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필요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호주

## 39. 유리 괴, 웨이스트

화학공업제품

품명

▶ 유리 괴 (MTI 분류 : 요업제품 > 유리제품)

HS코드

▶ 7001.00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적용협정

▶ 한-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위반사항

▶ 역외산(호주 등) 원재료인 석회석, 규석을 혼용하여 유리 괴를 생산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원산지결정기준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물품의 특성에 따라 협정상 규정된 완전생산의 의미를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함.

- HS 7001.00 유리 괴 등의 경우 원재료가 광물자원, 웨이스트, 스크랩 등으로 한-중 FTA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마호, 자호 및 차호를 참고하여 당사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40. 철도차량용 접합유리

화학공업제품

**품 명**

▶ 철도차량용 접합유리 (MTI 분류 : 요업제품 > 유리제품)

**HS코드**

▶ 7007.21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7003 주입법 및 룰법으로 제조한 유리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7005 플로트유리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7006 7003~7005호를 가공한 유리

**위반사항**

▶ 역외(유럽 내 비협정국)에서 제조된 제7005호 판유리를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제7007호 접합유리에 사용되는 제7003호부터 제7006호는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역외에서 제조된 기초유리(판유리 등)를 가공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므로 기초유리(제7003호부터 제7006호)의 역내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페루, 한-싱가포르

## 41. 유리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 품명

- ▶ 유리섬유직물 (MTI 분류 : 요업제품 > 유리제품)

### HS코드

- ▶ 7019.52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  
(예 : 실·직물)

### 적용협정

- ▶ 한-아세안 FTA

### 원산지결정기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 위반사항

- ▶ 수출자는 역외산 유리섬유사(HS7019)를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유리섬유직물(HS7019.59)을 제조 후 수출(임가공계약)하였으며, 이는 역외산 원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함. 또한, RVC 계산 시 적용된 원재료 가격이 부적정하여 FOB가격을 재산출한 결과, 역내부가가치 비율 불충족 및 과소신고 확인

### 유의사항

- ▶ 유리섬유와 원재료인 유리섬유사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단순 제작할 시 세번변경기준 및 역내부가가치기준 불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유의. 또한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에 필요한 FOB 가격 산출 근거자료 및 비원산지재료비 등 가격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한-베트남

IV

# 철강금속제품



## 42. 납의 괴

철강금속제품

품 명

▶ 납의 괴 (MTI 분류 : 철강금속제품 > 연제품)

HS코드

▶ 7801.91

적용협정

▶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위반사항

▶ ‘납의 괴’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스크랩(또는 정광)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나, 역외산 납의 괴를 최소허용기준 이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납의 괴’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 상품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재료 사용 및 이에 대한 증빙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를 충족하는 원재료 : 납광석(제2607호), 납의 정광(제2607호)이나 납의 스크랩(제7802호)
- 납의 괴와 동일한 세번인 역외산 납(조납 포함)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 최소허용기준 :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요건(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중미, 한-미국, 한-EFTA,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싱가포르, 한-뉴질랜드, 한-페루, 한-콜롬비아

## 43. 주석 과

철강금속제품

**품 명**

▶ 주석 과 (MTI 분류 : 비철금속제품 > 주석제품)

**HS코드**

▶ 8001.10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말레이시아)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위반사항**

▶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서류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제출된 서류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비원산지 원재료로 취급되었고, 이에 따라 역내부가가치도 40% 미달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누적기준 : 상품 원산지 결정에 있어 FTA 체결국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

**유의사항**

▶ 역내산 원재료로서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원재료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또한 해당 협정에 따라 원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매매계약서 및 Invoice 등에 역내산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역내 원산지 재료로 인정될 수 없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베트남



V

# 기계류



## 44. 공작기계

기계류

### 품명

▶ 공작기계 (MTI 분류 : 산업기계 > 금속공작기계)

### HS코드

▶ 8457.10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 적용협정

▶ 한-중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CTH + RVC \geq 50\%$ ) 다만, 제8537호 또는 제9032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제어(CNC)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 위반사항

▶ 공작기계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컴퓨터수치제어시스템이 장착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함은 물론,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CNC시스템까지 원산지룰풀어야 함. 특히, CNC 시스템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만의 보유기술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개연성이 높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45. 레이저기계부분품

기계류

**품 명**

▶ 레이저공작기계 부분품 (MTI 분류 : 산업기계 > 금속공작기계)

**HS코드**

▶ 8466.93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싱가포르)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위반사항**

▶ RVC(집적법) 산정 시 동일모델이더라도 시기별로 원재료 및 완성품 가격이 변동하여 원산지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유의사항**

▶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을 증빙하기 위한 Local C/O나 구매증빙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변동 시마다 RVC를 산출하여 원산지상품 여부를 판단할 필요  
 - 표준원가는 제조원가 관리를 위한 회계방식으로 원산지 판정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원가에 의해 판정해야 할 것임.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호주, 한-베트남

## 46. 밸브부분품

기계류

### 품명

▶ 밸브부분품 (MTI 분류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기계요소)

### HS코드

▶ 8481.90

8481 파이프, 보일러 동체, 탱크,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텁·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 적용협정

▶ 한-인도 CEP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 35%)

### 위반사항

▶ 완제품(HS 8481.90)과 소호(HS6단위)가 동일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원재료의 가치가 협정상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최소허용수준 :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 유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원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35%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만일, 사용된 역외산 원재료가 동일 소호로 분류될 경우 상기의 최소허용수준 추가 검토 필요) 품목분류 구조상 특정기기 및 그 부분품의 경우 원재료 동일호(HS4단위) 또는 동일 소호(HS6단위)로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세번 확인이 필요함.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47. 볼베어링

기계류

**품 명**

▶ 볼베어링 (MTI 분류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기계요소)

**HS코드**

▶ 8482.10

8482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

**적용협정**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위반사항**

▶ 완제품(HS 8482)과 호(HS4단위)가 동일한 역외산 부품을 사용하였으며,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원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호로 분류되거나, 모든 역외산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베어링의 경우 주요 부분품(볼·롤러·링 등)이 동일 호(HS 8482.9)로 분류되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가능성이 높아 역외산 사용 시 협정상 최소허용수준 확인, 역외산 원재료비 확인 등 주의 필요

\* 최소허용수준 :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EXW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EFTA, 한-터키

## 48. 치과용 부분품 및 기자재

기계류

### 품 명

▶ 치과용 부분품 및 기자재 (MTI 분류 : 정밀기계 > 의료용기기)

### HS코드

▶ 9018.49

9018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라피(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를 포함]

### 적용협정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45%)

### 위반사항

▶ 수출자가 상업송장에 특정 표시(ex. 'X')한 물품만이 협정적용 가능함을 표시하였지만, 수입자가 전체 상업송장에 대해 특혜적용 신청을 하여 해당 물품들의 한-EU FTA 협정 배제

1. 특정표시(ex. 'X')가 없음에도 한-EU FTA 적용 건  
→ 업체 자율 점검을 통해 수정신고 유도
2. 특정표시(ex. 'X')표시가 있으나 역외산(중국)으로 표시된 물품의 한-EU FTA 적용 건  
→ 체약상대국 검증요청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확인으로 추징

### 유의사항

▶ 원산지가 혼재된 물품의 경우 상업송장에 물품별로 정확한 원산지 정보 기재가 필요하며, 또한 단품과 세트물품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 협정별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 49. 의료기기

기계류

**품 명**

▶ 의료기기 (MTI 분류 : 정밀기계 > 의료용기기)

**HS코드**

▶ 9018.50

9018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라피(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

**적용협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35% or RVC 45%)

**위반사항**

▶ 역외(멕시코)에서 제조된 물품을 미국산으로 우회 수입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한-미 FTA를 적용받음.

1. 멕시코 내 OEM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을 미국 수출자에게 수출
2. 미국 수출자가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적용

**유의사항**

▶ 제조·생산 등이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물품이어야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또한, 많은 품목(모델)을 수출입하는 경우, 역외산 품목을 원산지상품으로 혼동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당부드림.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50. 수술용현미경

기계류

### 품명

▶ 수술용 현미경 (MTI 분류 : 정밀기계 > 의료용기기)

### HS코드

▶ 9018.90

9018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라픽(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

###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 위반사항

▶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역외산 부품 사용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유의사항

▶ ① 역외산 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부품이 완제품과 다른 호로 분류 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만약 사용된 역외산 부품이나 원재료가 동일 호로 분류될 경우 최소허용수준의 추가 검토가 필요)

\* 최소허용수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② 품목분류 구조상 특정기기 및 그 부분품의 경우 원재료가 동일 호(HS4 단위) 또는 동일 소호(HS6단위)로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로 반드시 정확한 세번 확인이 필요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호주, 한-베트남

# 51. ECU (한-인도)

기계류

**품 명**

- ▶ ECU (MTI 분류 : 수송기계 > 항공기 및 부품)

**HS코드**

- ▶ 9032.89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적용협정**

- ▶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CTSH + RVC 35%)

**위반사항**

- ▶ 완제품(제9032.89호)과 소호(HS6단위)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세번 변경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역내 발생된 부가가치가 35% 미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원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35%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FOB가격 대비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물품일 경우 비원산지 재료비의 변동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없음

## 52. ECU (한-중국)

기계류

### 품 명

▶ ECU (MTI 분류 : 수송기계 > 항공기 및 부품)

### HS코드

▶ 9032.89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 적용협정

▶ 한-중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CTH + RVC 50%)

### 위반사항

▶ 동일 해외거래처로부터 동일 규격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입함에도 특정 기간 이후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수입 건이 있어 이와 비교 검증한 결과, 이전 수입 건이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부가 가치기준은 불충족으로 결론

### 유의사항

▶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인 경우(예: CTH + RVC 50%), 두 가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한-중 FTA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기관 발급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며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책임은 발행 신청자에게 있음에 유의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53. 손목시계

기계류

**품 명**

- ▶ 손목시계 (MTI 분류 : 정밀기계 > 시계)

**HS코드**

- ▶ 9101.11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

-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MC 40%)

**위반사항**

- ▶ 고가의 역외산 재료(부품)를 사용하여 비원산지재료비가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유의사항**

- ▶ ① 귀금속 시계와 같이 물품 특성 상 고가의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완제품 가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② 한-E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려면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C/O가 양식에 맞게 발급되었는지의 형식적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C/O에 수출자의 서명과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 한-EU, 한-터키



VI

# 전자전기제품



## 54. 손전등세트

전자전기제품

### 품명

▶ 손전등세트 (MTI 분류 : 가정용전자제품 > 조명기기)

### HS코드

▶ 8513.10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적용협정

▶ 한-중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위반사항

▶ 세트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세트물품 FOB가격의 15%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어 협정적용 배제

### 유의사항

▶ 세트물품은 HS 통칙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물품은 각 구성 제품별로 품목번호를 확인한 후 원산지를 판정해야 함. 반면, 세트 물품 규정이 없는 FTA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상 세트물품으로 분류되는 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함에 유의

1.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2.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미, 한-콜롬비아, 한-페루

## 55. 흑연전극봉

전자전기제품

**품 명**

▶ 흑연전극봉 (MTI 분류 : 중전기기 > 정지기기)

**HS코드**

▶ 8545.11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말레이시아)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위반사항**

▶ 역내부가가치 산출 시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을 생산국(말레이시아)의 FOB 가격으로 조정하지 않고 역외(독일)에서 발행된 제3국 인보이스상의 가격으로 조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이는 실제 생산국의 FOB 가격으로 조정하여야하는바, 이에 따라 실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유의사항**

▶ 제3국에서 발행된 인보이스 가격이 원산지증명서상 기준가격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VII

# 생활용품



## 56. 명품가방

생활용품

### 품명

▶ 명품가방 (MTI 분류 : 신변잡화 > 가방)

### HS코드

▶ 4202.21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 (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 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적용협정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위반사항

▶ 상대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결과,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적용 배제

### 유의사항

▶ 유명 브랜드의 병행수출입 물품이더라도 수출국 자체를 원산지로 신뢰할 수 없음. 동종의 여러 모델인 경우, 제품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이 수출국 이외의 역외인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특혜적용이 필요함. 또한, 병행수출입 물품을 거래하는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를 보관하여 검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EFTA, 한-뉴질랜드,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중미,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터키, 한-페루, 한-호주

## 57. 신발

생활용품

**품 명**

▶ 신발 (MTI 분류 : 기타 생활용품 > 신변잡화)

**HS코드**

▶ 6403.99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파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협정**

▶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RVC 40%)

**위반사항**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은 충족하나, 역내부가가치가 4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 배제 및 추징

**유의사항**

- ▶ ① 한-인도 CEP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요함.
- ② 역외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아 조립·봉제·가공만 수행하는 인도의 신발 산업 특성상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및 충분한 가공공정 불인정일 개연성이 높음.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없음

## 58. 운동기구

생활용품

### 품 명

▶ 운동기구 (MTI 분류 : 운동 및 취미오락기구 > 운동기구)

### HS코드

▶ 9506.99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 적용협정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위반사항

▶ CTH 기준의 경우, 완제품과 비원산지재료의 HS 4단위가 달라야 해당 완제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만, 본 건의 완제품인 운동기구(제9506.99호)에서는 완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부분품(제9506.91호)과 HS 4단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유의사항

▶ 제95류는 완제품과 부분품·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대표적인 류에 해당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CTH인 협정의 경우 완제품에 비원산지 부분품·부속품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유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EFTA, 한-뉴질랜드, 한-미국, 한-싱가포르, 한-칠레, 한-캐나다, 한-터키, 한-호주

VIII

# 잡제품



## 59. 다이아몬드

잡제품

### 품 명

- ▶ 다이아몬드 (MTI 분류 : 보석 및 귀금속제품 > 보석)

### HS코드

- ▶ 7102.39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적용협정

- ▶ 한-인도 CEPA

###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 35%)

### 위반사항

- ▶ 해당 물품의 경우 당사국인 인도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어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은 충족하나, 수출자가 부가가치기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역내부가가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 ▶ 본 건과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CTSH + RVC 35%)인 경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출자가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 적용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에게는 별칙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 동일 협정

- ▶ 없음

## 60. 큐빅지르코니아

잡제품

### 품 명

▶ 큐빅지르코니아 (MTI 분류 : 보석 및 귀금속제품 > 보석)

### HS코드

▶ 7104.90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웬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웬 것을 포함한다)

### 적용협정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위반사항

▶ 국제간접조사 결과, 해당 물품 중 일부의 원산지가 제3국이거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특혜배제 및 추징

### 유의사항

▶ 본 HS코드 완제품의 경우 사용된 재료가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 이라면 재료의 원산지는 상관없으나, 기타 재료가 사용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다면 완제품과 비원산지재료의 HS 4단위가 달라져야 함에 유의. 또한 역외산 원재료를 단순가공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수행되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 동일 협정

▶ 한-터키



IX

부록



## 1.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 (a) 집적법(BU : Build-Up metho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비}(VOM)}{\text{상품가격}(AV)} \times 100$$

RVC : %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AV : FOB가격으로 조정된 상품의 거래가격 / 공장도 가격(한-캐나다 FTA)

VOM :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

### (b)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상품가격}(AV)} \times 100$$

RVC : %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AV : FOB가격으로 조정된 상품의 거래가격

VNM :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c)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순원가}(NC)} \times 100 \rightarrow \text{미국, 콜롬비아}$$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순원가}(NC)} \times 100 \rightarrow \text{캐나다}$$

RVC : %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NC : 순원가는 총비용에서 판촉·마케팅·A/S·로열티·운송·포장 관련비용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을 뺀 가격

VNM :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d) MC법(MC : iMport Contents)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공장도가격}(EXW)} \times 100$$

MC : %로 표시된 비원산지재료비 비율 / VAR xx%라고 표기하기도 함

VNM :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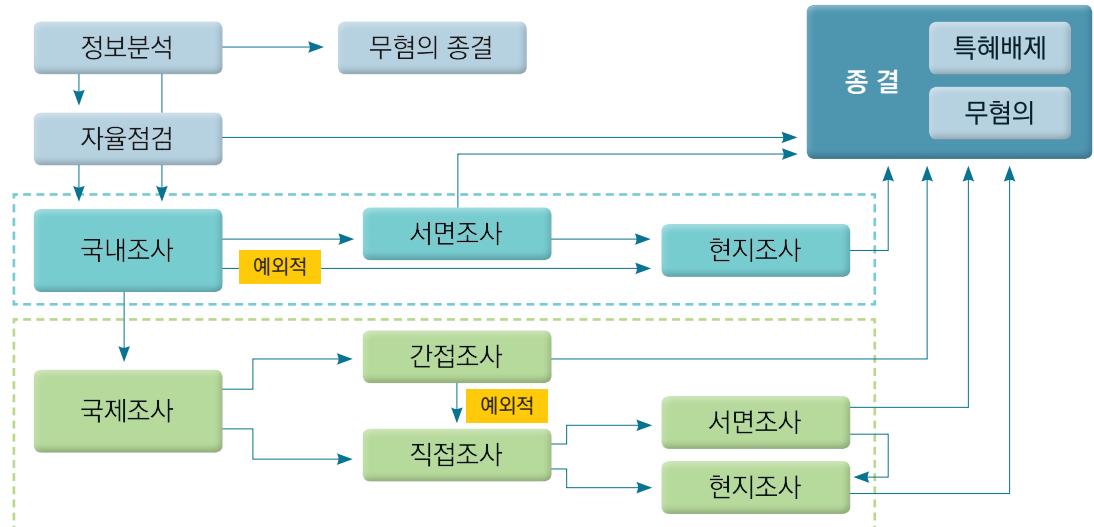
EXW :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환급되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표〉 산출방식에 따른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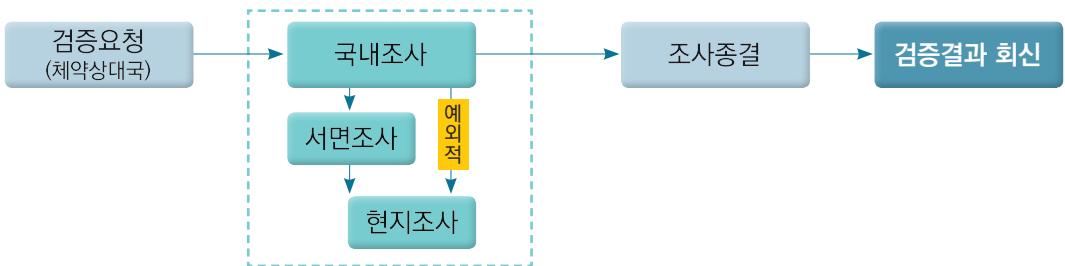
구분	싱가포르	인도 중국	칠레	ASEAN 베트남 뉴질랜드	미국 콜롬비아	EFTA EU 터키	페루	호주	캐나다	중미
산출방식	공제법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 (순원가)법 집적법	MC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MC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상품가격 계상기준	관세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치	공장도 가격	FOB	조정가치	공장도 (거래)가격	FOB

## 2. FTA 원산지검증 절차

###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흐름도



### ■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흐름도





#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사례 60選

## — 발행일

2020. 6.

## — 발행처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동)

## — 편집위원

심재현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김세훈 자유무역협정1과장  
구창휘, 강민규, 서 형, 윤지원, 김기형, 한나미, 신수민  
이종민, 고아름, 김다혜, 정은영, 우영길, 박현정, 김호연

## — 디자인

부경디자인  
T. 02. 2274. 5230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사례 60選